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스타빌엔지니어링(김용회) ② 쌍용건설(주)(김석준)
 ③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윤세한)
 ④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정종화, 유태원)

나. 전화번호 : ① 044-566-8289 ② 02-3433-7114 ③ 02-3438-8000 ④ 02-6333-3000

2. 명칭 :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건축물 창 주위의 열교 저감 시공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건물 창호 주위에 마감 및 시공성을 위해 단열재를 결손시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창호주변의 결로 현상을 저감하기 위하여 단열재 결손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창 주위를 열 손실 방지 및 내외부 마감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갖는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건축물 창 주위의 열교 저감 시공 공법이다.

<범위>

건축물의 벽체와 창호 사이 열교 저감에 의한 에너지 손실 최소화와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 본체와 매움체로 구성된 열교 차단재를 콘크리트 벽체와 타설 일체로 시공하고 벽체 외단열과 연속성을 갖도록 시공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으로 철도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서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기준 마련(안 제4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5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마련함

나.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기준 마련(안 제7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인증서 변경 및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9조, 제10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성능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발급 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도록 함

라. 성능점검 기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제14조)

성능점검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경영시스템 준수여부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성능검사 기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5조~제18조)

성능검사 기준을 명시하고,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내용연수 연장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